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4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이달희·김상훈·김예지

김승수 • 박준태 • 고동진

이인선 · 김정재 · 이만희

김종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 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조세의 감면)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8조의2(조세의 감면)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
	세를 감면할 수 있다.